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56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창원시 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건을 신설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의 원 : 이우완 · 감규상 · 김인애 · 문순규 · 박해정
박현재 · 백승규 · 변보미 · 서명일 · 정보빈
심임숙 · 오춘근 · 이원주 · 이정희 · 정순욱
차중현 · 홍용채 의원(17명)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
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 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건을 신설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금지행위)”를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

2.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벼룩시장 등에서의 상행위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조건(제10조제2항 관련)

1. 사전 계획 수립

가. 공익적 프로그램(무료 교육·체험, 문화행사, 환경캠페인, 자선행사 등)을 포함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상행위 허용 범위 및 장소

가. 허용 범위: 수제품, 중고물품의 거래. 다만, 음식물 및 기성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허용 장소: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민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다만, 텍(deck) 및 잔디 구역에서는 노점 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행사 결과 제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사 수익 및 운영보고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① <u>시장은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p>	<p>제4조(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① <u>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금지행위) <u>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법 제49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p>제10조(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등) ① <u>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u></p>
<p>1. <u>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u></p>	<p><삭제></p>
<p>2. <u>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u></p>	<p><삭제></p>
<p>3. <u>흡연행위</u></p>	<p><삭제></p>
<p><신설></p>	<p>② <u>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u></p>
	<p>1.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u></p>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

2.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벼룩시장 등에서의 상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

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최초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2.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다만,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제3조(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제4조(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목공·공원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그 전액을 점용허가를 받을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점용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못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실제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하지 않은 경우
5.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8조(점용료의 조정)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점용료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금지 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법 제49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3. 흡연 행위

제11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